



AI 융합 창의 트랙제 운영 및 교육과정개발 규정

[제목개정 2022. 9. 1]

제정일	2019.12. 1
개정일	2023.11. 1
개정차수	6차
담당부서	학사운영과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에 따른 인재상을 재정립하고 학사제도 유연성을 통한 AI 융합 창의 트랙제(이하 “트랙제”라 한다)를 운영함으로써 사회변화 및 산업체 요구에 부응하는 AI 융합 및 창의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개발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22. 9. 1, 2022. 9.15, 2023. 3. 1)

제 2조 (교육과정 유형) 트랙제는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다. (개정 2023. 3. 1)

제 3조 (교육과정 대상 및 방법) ① 트랙제는 년제, 학년, 계열 제한 없이 학기 단위로 운영한다. (개정 2020. 8.10, 2023. 3. 1)

② (삭제 2020. 8.10)

③ (삭제 2022. 9. 1)

④ 트랙제 기자재 및 소모품 등은 주관 학과에서 신청·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트랙제 교육과정이 폐지 될 경우 기자재 및 소모품 등은 주관 학과에 귀속된다. (개정 2022. 3. 1)

⑤ 트랙제 교육과정의 유연성을 위하여 집중이수제, 계절수업, 교외수업, 온라인 수업 등을 운영할 수 있다.

⑥ 기타 트랙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학사운영 관련 규정에 준하여 운영한다.

제 3조의 2 (교육과정운영) ① 각 트랙에 편성된 교과목 전체를 이수하고 각 교과목별 학점이 C학점 이상일 경우, 해당 트랙의 이수증을 수여하고 졸업증명서에 트랙제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기재한다. 단, 재학 중 1개 트랙에 한하여 이수증을 수여한다. (개정 2022. 9.15)

② 각 트랙에 편성된 교과목 전체를 이수하고 AI 교과목을 추가 이수할 경우, 각 교과목별 학점이 C학점 이상일 때 AI+융합 ○○○ 트랙 이수증을 수여하고 졸업증명서에 AI+융합 ○○○ 트랙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기재한다. (개정 2022. 9.15)

③ 기존 트랙 교과목 외에 AI 교과목과 융합하여 이수하는 학생의 경우 재학 중 최대 4과목 (12학점) 까지 수강할 수 있다. 단, 한 학기 최대 수강학점은 9학점으로 한다. (개정 2022. 9.15)

④ 트랙제 수강은 학기를 연속하여 2개 학기 또는 3개 학기로 교과목을 나누어 수강할 수 있다.

⑤ 트랙의 교육과정이 폐지될 경우 일부 교과목을 이미 이수하였다더라도 해당 트랙을 이수할 수 없다. (개정 2022. 9.15)

⑥ 2개 이상의 트랙 교육과정에서 개별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, 트랙제 교육과정 교과목 성적 미달로 인해 트랙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교과목을 재수강할 수 있다. (신설 2022. 9.15)

[본조신설 2022. 9. 1]

제 4조 (교육과정개발 및 개편) ① 교육과정 개발은 「AI 융합 창의 트랙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지침」에 의거 트랙제 별 교육과정개발위원회에서 개발, 편성하고 대학평의원회 자문을 거쳐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총장이 확정한다. (개정 2020. 8.10, 2022. 9.15)

② 교육과정의 편성은 개발, 개편, 단순 변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. (개정 2020. 8.10, 2023.11. 1)

제 5조 (교육과정 편성) ① (삭제 2022. 9. 1)

② 트랙제 교육과정은 소속학과 전공학점으로 인정하며 교과목 별 3학점 이내로 최대 9학점 까지 편성한다.

③ (삭제 2022. 9.15)

④ 트랙제 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육목표를 수행하고 국가의 산업동향과 지역의 산업체 요구분석을 통해 역량을 성취할 수 있도록 현장실무 및 역량 기반 교과목으로 편성한다. (개정 2023. 3. 1, 2023.11. 1)

⑤ 기타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에 따른다.

제 6조 (교육과정개발위원회) ① 트랙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산업체 요구가 반영된 역량 및 창의 융합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을 위하여 트랙제 별 교육과정개발위원회를 둔다. (개정 2023. 3. 1)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, 위원은 전임교원 및 산업체 실무전문가로 한다.

④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평가와 개선이며, 기타 교육과정에 관한 제반사항에 참여할 수 있다.

⑤ 각 트랙은 해당 교육과정개발위원회에서 트랙제 수업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에 대해 검토 후 AI 융합 창의 트랙제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 기자재 구입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다. (개정 2022. 3. 1, 2022. 9.15)

제 7조 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